

2025년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[재]공고

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리 시 청년창업가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「2025년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청년(예비)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9월 19일

삼척시장

1

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
- 모집규모 : 10명
- 모집분야

분야	대상업종
6차산업창업	지역농특산물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
제조·기술창업	신재생에너지, 환경, 식품, 정보통신, 전기·전자, 재료, 기계, 화공, 섬유, 생명, 공예 등
지식창업	디자인, 문화서비스업, 아이디어 창업, 웹디자인, 번역, 마케팅홍보, 지식콘텐츠, 전문컨설팅 등
일반창업	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

- 공고기간
(기존) 2025. 9. 5. ~ 9. 19. (변경) 2025. 9. 5. ~ 9. 29.
- 접수기간
(기존) 2025. 9. 8. ~ 9. 19. (변경) 2025. 9. 8. ~ 9. 29. 18:00 마감
- 사업기간 : 2025. 11월 ~ (예정)
- 지원내용
 - 창업 간접비 1,200만원(1년) 지원 ※자부담 200만원 포함
 - (후속지원) 최종평가 우수업체 대상 청년 창업기업 등록 혜택 제공

○ 신청자격

- (예비창업자) **공고일 기준**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
 - ※ 사업기간 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필수
- (기존창업자) **공고일 기준** 창업 1년 미만 : 2024. 9. 5. 이후 창업
 - ⇒ 사업개시일 기준 : 개업연월일(개인), 회사성립연월일(법인)
 - ※ 신청하는 창업 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제외
- (공통 기준)
 - **공고일 기준**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이상 49세이하 (예비) 창업자(1976~2007년 출생자)
 - ※ 참여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삼척시에 주민등록 유지 필수
 - ※ 사업장은 반드시 삼척시에 소재하여야 함
 - **공고일 기준** 고용보험 미가입자
 - 아래의 신청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
신청 제외 대상

- 최근 2년* 이내 정부 (중앙, 지방),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**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참여중인 자
 - * 2024년도 이후 사업 참여자
 - *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출원 및 등록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-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- **[붙임2]의 참여제한 대상 업종***을 창업하였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
 - * 참여제한 대상 업종의 분류코드는 「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」 기준임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(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)
- 기타 삼척시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 - ※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, 보조사업 수행기간 중에도 위 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
구분	지원 세부사항		
창업 간접비	☞ 재료비, 외주용역비, 지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1년간 1,200만원 지원(자부담 200만원 포함)		
	< 지원가능 항목 >		
	보조세목	지원항목	세부내용
	재료비	재료비	-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※ 월 50만원 이내 집행
	사무관리비	임차료	-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(사무실)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, 보관료 ※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 집행
		외주용역비	- 창업자(기업)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		소모품비	- 소모품, 사무용품 등 구입비(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한함) ※ 지원금(보조금)의 10% 이내 집행
		지급수수료	-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▶ 기술이전비, 시험·인증비, 기자재 임차비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법인설립비 등
		홍보비	- 창업자(기업)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 비용
	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-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
교육훈련비		- 창업자(기업) 대표 등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※ 지원금(보조금)의 10% 이내 집행	
지원 제외 항목			
① 인건비성 경비 ② 사업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③ 건물 및 토지매입, 리모델링,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자산형성적 비용 ④ 제세공과금, 회계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(전기, 수도, 인터넷, 보안, 소방 등) ⑤ 현금성 캐쉬, 포인트, 상품권, 증권, 이체수수료 등 사업활동과 무관한 현금 지출 ⑥ 단순 친목비, 여비, 주류비(술) 등 ⑦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인 경우 임차료 신청 불가			

4

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5. 9. 8.(월) ~ 9. 29.(월) 18:00

※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며, 접수건수 미달시 신청기간 연장공고 할 수 있음

○ 신청방법 : 보탬e(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) 접수

※ 보탬e사이트 <https://www.losims.go.kr>

※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, 마감일 18:00 시스템 접수 마감

○ 문의처 : 삼척시 경제과 청년지원팀(☎033-570-3365)

○ 제출서류(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

제출서류

1. 참여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4.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
5. 가족관계증명서(본인, 부, 모 기준 각 1부)
6.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또는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1부
7. 지방세·국세 완납증명서 1부
8. 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 1부
9. 우대사항(가점부여) 증빙 서류 ※ 해당 시, 증빙서류 제출
10. 사업자등록증명 1부(기 창업자에 한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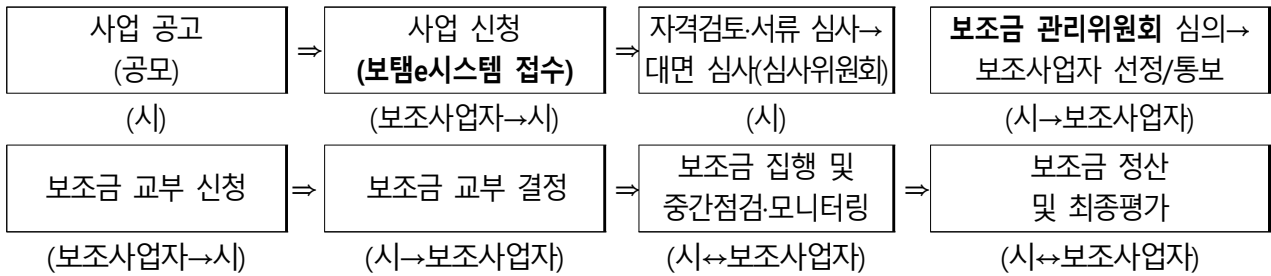
※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

※ 최종선발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된 후, 보조금 지급 청구 시 **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함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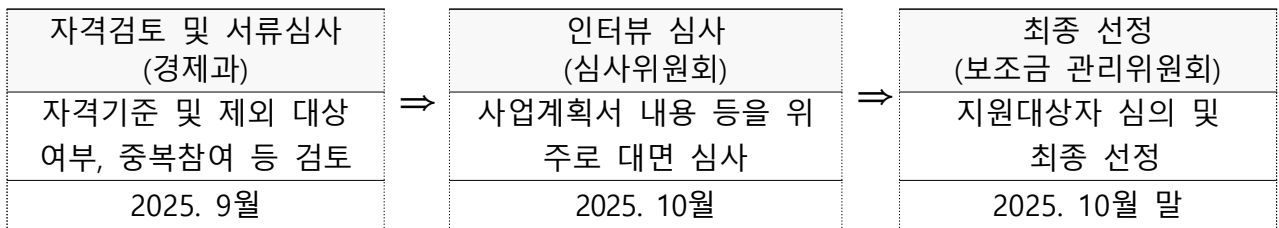
5

추진일정 및 선정방법

○ 추진일정



○ 선정방법



※ 추진일정, 선정방법 등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(1차) 서류 심사 : 연령, 주소지 등 자격, 지원 제외대상 여부, 중복 참여 등
- (2차) 인터뷰 심사 :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의
 - 심사방법 : 신청자 발표(5분 내외) → 질의응답(10분 내외)
 -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, 고득점 순으로 선정

< 심사기준표 >

연번	심사항목	세부내용	배 점
1	창업 실현 가능성	- 창업 동기	15점
		- 창업아이템의 전문성	15점
2	창업아이템의 경쟁력	- 창업아이템의 창의성	15점
		- 창업아이템의 성장 가능성	15점
3	사업추진 전략	- 지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	10점
		- 성과 창출 전략	10점
4	창업자 역량	- 대표자 및 팀원의 사업추진 역량	20점
계			100점
[가점 사항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(3점) •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(2점) ※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최·주관 대회에 한함 • 최근 2년 이내 중앙부처,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하 창업교육센터의 창업교육과정 이수자(1점) 			최대 5점

- (최종 선정)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
- ※ 선정 결과 개별 문자 통보 예정

○ 평가 중 유의사항

-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인터뷰 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인터뷰 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선정 후 유의사항

◆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사업 중도 포기 시에는 사업 선정 취소, 삼척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보조사업자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, 기타 회계관계법령,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
-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삼척시 내 지역제품 및 지역 시공업체를 우선하여 선택해야 함
- 후속지원 사업은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

6

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사업기간 이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 (사업자 등록)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사업수행 중 삼척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, 정당한 사유 없이 휴·폐업하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
- 선정자는 삼척시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지원 종료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